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 이 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종속변수의 경우 Rawls의 사회적 정의를 토대로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으로, 독립변수들의 경우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정향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정책 등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역요인을, 조절변수의 경우 국회의 공정성을, 통제변수의 경우 개인적 배경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1)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지위, 공동체이력, 정부정책 관심도, 삶의 만족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청렴도가 높을 경우 국회의 공정성은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공정성, 공정성 인식, 국회의 공정성, 사회적 정의, 주민인식도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등의 표현들과 로스쿨 제도의 음서제,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시 노조자녀의 우선기회 부여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정의 또는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이란 강연에 대한 대중들의 신드롬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일반 대중들은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는 사실(facts)과 가치(values)를 결합한 개념이다. 정의에 대한 연구는 2가지 접근방법이 존재하는데, 철학적 접근방법은 정의는 무엇이어야 한다(what justice must be)는 당위론적 접근방식을 의미하고(Aristotle, 2000; Pieper, 1972; Rawls, 1971; Sandel, 1982; Sen, 1992), 경험적 접근방법은 주관적 경험(subjective experience)을 통해 정의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그들이 정의에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Cropanzano et al., 2007; Folger and Skarlicki, 2001; Greenberg and

Wiethoff, 2001; Lind, 2001).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의 또는 불공정성 인식은 실제 분배(actual distributions), 절차(procedures), 상호작용(interactions) 등이 공정성 원리에 기반을 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Jost & Kay, 2010).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인식은 규범적 관점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도구적 관점에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결과들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규범과 실제적인 현실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정책들이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ller(2003)가 지적했듯이, 철학 및 공동체 심리학 분야가 사회적 정의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을지라도 개인들이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고, 작동시키는 것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정의,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론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이종수, 2011)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정의가 행정 및 정책학에서 중요한 주제일지라도 개인들이 사회적 정의를 인식하는데 있어 그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정의 또는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공정성 또는 형평성 개념 연구들(차용준, 1988; 김명환, 2012; 김현철, 2004; 김철, 2011; 유민봉·고성철, 2001; 황청일, 2005; 안국신, 2003; 임의영, 2011; 김정호, 1995), 관료제와 형평성의 관계 연구들(양형일·이태영, 1993; 김석준, 1991), 형평성 기준 연구(이민호, 2010), 재정과 형평성 관계(이재은, 1988; 윤상용, 2011) 등이 존재한다. 물론 주민공정성 인식과 관련하여, 김은희·박희서(2007)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공정성 지각과 친정부적 자발행위의 관계를, 신의기·강은영(2012)이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들 또한 행정서비스 또는 집행과 관련된 연구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사회적 정의가 행정 및 정책학에서 중요한 주제일지라도 개인들이 사회적 정의를 인식하는데 있어 그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자인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 인력의 상당부분이 지방보다는 중앙으로 집중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지역주민들간 사회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며 사회통합을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정치적 행위자인 국회가 지역주민들의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조절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공정성을 비롯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정책적으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 또는 공정성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사회적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

역사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정의를 규정하면서 사회적 정의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치학 및 도덕철학분야에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철학자들은 사회적 정의를 평등, 가치, 자원배분, 공공선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Miller, 2003; Prilleltensky, 2012; Sandel, 2009).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등과 혼용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는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fairness), 권리(right)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Nalbandian 1989). 이러한 사회적 정의의 논의는 Rawls(1971)의 공정(fairness)으로서 정의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Rawls의 공정으로서 정의론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론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1) Rawls의 공정(fairness)으로서 정의론

Rawls는 사회적 정의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한 장치로서 순수절차상의 정의가 보장되는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고 여기서 제반전제와 제약이 유효한 한 합의되는 일련의 원칙이 사회적 정의의 원칙으로 설명한다(김항규, 1994). 첫째, 정의의 제1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관련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들의 분배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되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과 차등의 원칙(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 2) Rawls의 공정(fairness)으로서 정의론에 대한 반박이론

Rawls의 공정(fairness)으로서 정의론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임의영, 2011:274),<sup>1)</sup> Feinberg(1973)는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면서 책임에 근거한 도덕원리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Rawls(1971)의 정의론이 개인의 책임부분을 적절치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응분원칙/가치일반/응분의 근거에 합당한 응분의 몫 부여 등을 주장하였다. Nozick(1974)은 자유와 최소국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지상주의에 기초한 정의론의 관점에서 Rawls의 정의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소유권리론/가치일반/자유교환, 자유선

1) 본 내용은 임의영(2011)의 연구를 요약,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택 등을 주장하였다. Dworkin(2002)은 권리, 동등한 배려와 존중/개인적 선과 공동체적 선의 조화 등을 지향하면서 실제적인 정의관의 관점에서 Rawls의 정의론이 불우한 처지에 처하게 된 원인을 단순히 여건에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하면서 자원평등론/가치일반(자원)/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 등을 주장하였다. Sen(2009)은 실질적 자유/심의회민주주의 등을 지향하면서 실질적 자유를 지향하는 정의론의 관점에서 Rawls의 정의론이 동일한 자원이 주어져도 사람마다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능력이론/가치일반/필요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Walzer(1983)는 복합평등/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단순 평등관념을 극복한 다원주의적 정의관의 관점에서 Rawls의 정의론이 사회적 가치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분배원칙을 제시하는 것에 멈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원적 정의론/가치일반(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적합한 분배원칙 적용 등을 주장하였다. Young(1990)은 평등, 참여/민주적 문화 다원주의 등을 지향하면서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선 정의관의 관점에서 Rawls의 정의론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차이의 정치/가치일반의 정치가 용해된 심의회민주주의 등을 주장하였다.

〈표 1〉 사회적 정의론의 주요 논거 비교

주요 학자	정의관	평가기준	주요 이론	핵심 주장
노직(R. Nozick)	자유지상주의 정의관	역사적 과정	소유권적 정의론	자유의 극대화
롤즈(J. Rawls)	자유주의 정의관	현재 분배상황	공정으로서 정의론	자유와 평등의 조화
벤담(J. Bentham)	결과주의 정의관	미래의 복지	공리주의적 정의론	복지의 극대화
월쩌(M. Walzer)	공동체주의 정의관	다양한 가치	복합평등론	다원주의적 정의
페인버그 (J. Feinberg)	도덕주의 정의관	책임	도덕원리적 정의론	자유와 책임
드워킨(R. Dworkin)	결과주의적 정의관	분배	자원평등적 정의론	개인적 선과 공동체적 선 조화
센(A. Sen)	자유주의 정의관	최소한의 보장	실질적 자유정의	실질적 자유/심의회민주주의
영(I. M. Young)	자유주의적 정의관	심의회민주주의	차이의 정치	평등, 참여, 문화 다원주의

출처: 정원섭(2011); 임의영(2011)

## 2.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fairness)의 결정요인

### 1) 개인적 요인

시민들이 공정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은 주로 심리적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Gollwitzer & van Prooijen(2016)은 개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정의를 인식하는지, 인지된 정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개인들의 반응은 환경, 개인적 특성, 환경 및 개인적 특성간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은 사회가치적 정향과

도덕적 자아 개념을 포괄한다. 즉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들은 개인들의 성격(characteristics), 신념(beliefs), 동기(motivations), 정의성 인식(justice perceptions) 등이라고 할 수 있다(Hegtvedt, 2006; Hegtvedt & Cook, 2001). 여기서 특성(characteristics)은 인구학적(성별, 연령, 인종 등) 또는 상대방에 대한 입장(positions)등을 의미한다. 신념체계(belief systems)는 문화적, 정치적 이데올로기(Jost & Kay, 2010) 또는 타인과 관련된 개인들의 특수한 행위가치(Lerner, 1980) 등을 의미한다. 개인 동기는 자기이익적 물질주의에서 타인지향적 사회적 관심과 도덕적 권한(moral mandates)을 포괄한다(Gillespie & Greenberg, 2005; Skitka et al., 2010).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태도와 이데올로기적 신념의 역할에 따라 변하고, 절차적 정의는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과 관련된다(Rothmund et al., 2016).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신념(beliefs)은 정치적 태도와 이념의 핵심요소를 반영한다(Jost, Federico, & Napier, 2009).<sup>2)</sup>

그리고 웰빙적 요인인데, 사회적 정의는 웰빙(well-being)와 사회적 태도(social attitudes)와 관련된다(Zhdanova & Lucas, 2015). 현재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정의적 신념(justice beliefs)은 물리적, 심리적 웰빙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Bègue and Bastounis, 2003; Dalbert, 1999; Lucas et al., 2011). 그리고 인간들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데(Lerner, 1980), 이러한 믿음이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정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물리적, 심리적 웰빙을 강화하고(Correia, Batista, & Lima, 2009; Otto, Glaser, & Dalbert, 2009), 정의적 신념과 관련된다(Dalbert, 2009; Lucas & Wendorf, 2012). 분배적 정의는 웰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키고 절차적 정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Weiss, Suckow, & Cropanzano, 1999). 이러한 주관적 웰빙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로 분류될 수 있다. 웰빙(Well-being)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행복(happiness)은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 현재상태를 강조하여 최근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가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감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삶의 만족(life evaluation)은 과거 경험을 중시하여 과거를 토대로 삶을 평가, 즉 회고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를 의미한다(김이수, 2016).<sup>3)</sup> 특히 행복은 공정성 인식에 중요한데, Finnis(1980)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행복(happiness)이 정의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행복에 대한 입장은 인간의 번영과 관련되는데, 그는 정의는 인간이 번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 2) 사회적 요인

Liebig & Sauer(2016)에 의하면, 정의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즉 사회적 구조와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회적 가치로 규정될 수 있고, 정의 그 자체는 광범위한 사회적 제도(예를 들어, 경제, 정치제도 등)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social force)이다. 공정한 사회는 참여와 사회적 자

2) 예를 들어 형평(equality)은 좌파의, 동등함(egalitarian)은 우파의 선호대상이다(Jost et al., 2009).

3) 일부 연구자들(Gundelach and Kreiner, 2004; Haller and Hadler, 2006)은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구분하여 행복인식과 삶의 만족을 구분한다. 즉 주관적 웰빙은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웰빙을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행복(happiness)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Sagiv and Schwartz, 2000).

본의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사회적 자본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Ferragina, 2010). 이러한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갈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자본으로서 Brewer(2003)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조건적 협력(conditional cooperation)을 통한 타인과의 협력의지, 행위자의 신념(beliefs)을 통해 투표와 기부 성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Knack, 1992)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후원과 관련된 사고와 행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이타주의(social altruism)<sup>4)</sup>, 독립선언문과 권리장전 등에 체화된 핵심적 시민가치(Fullinwider, 1999)인 평등(equality) 의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tolerance), 복지와 시민수요에 대한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인간주의(humanitarianism),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sup>5)</sup> 등을 들고 있다(김이수, 2016). 건강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공동체생활에서 상호연계성의 질을 의미하는(Bess et al., 2002) 공동체 의식도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데(Pichler, 2006; Helliwell and Putnam, 2004; Prezza and Constantini, 1998; 통계청, 2014; 한국행정연구원, 2014), 공동체 의식은 감정(feelings), 상호작용(interactions), 사회적 결속(social bonding)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이익(interest)의 공정분배에 기여한다. Miller(2003)는 사회환경으로 연대 공동체(solidaristic community), 도구적 협의회(instrumental association), 시민의식(citizenship) 등을 들고 있다. 인간들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를 촉진시키고, 상호호혜적 동기(reciprocal motive)는 공정성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강한 상호호혜성은 공정성 규범(fairness norms)으로 연결된다(Henrich et al., 2004).

그리고 사회적 갈등(social conflict)으로서, 사회적 갈등의 원천은 불공정성의 인식에서 초래된다. 사회적 정의는 자원배분시스템(Fleurbaey, 2008)과 관련되는데, 이는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Konow & Schwettmann, 2016)라고 할 수 있다. 정의를 둘러싼 갈등은 보편적인데, 이에 사회적 갈등은 본질상 반정의적 갈등이다(Montada, 2012).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들이 정의롭다고 간주하는 규범적 기준, 권리, 요구 등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기대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규범적 기대(normative expectations)를 위반할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Montada and Maes, 2016).

### 3) 제도적 요인

Miller(2003)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과 집단들,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화된 유기체로서 사회적 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제도들(institutions)이 존재한다. 사회적 정의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행동의 심장이다(Rothmund et

4) 사회적 이타주의(social altruism)는 기부(charitable giving), 자원봉사(volunteer work), 인구조사 참여(census participation), 공동체문제해결(working to solve community problems), 배심원으로 봉사하기(willingness to serve on juries) 등을 포괄한다(Knack, 1992).

5) 시민참여는 시민단체 활동, 즉 시민협의회(civic associations) 등으로 나타나는데(Andrews and Withey, 1976; 통계청, 2014; 한국행정연구원, 2014), 이러한 시민협의회(civic associations)는 일반화된 상호호혜성(reciprocity)과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등을 구축한다(김이수, 2016).

al, 2016). Jost & Kay(2010)에 의하면,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의 속성(property)으로서, 편익(benefits)과 부담(burdens)의 분배를 의미하고, 개인과 집단들의 기본권리, 자유, 특권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결정을 지배하는 절차(procedures), 규범(norms), 규칙(rules) 등을 중시한다. Rawls에 의하면, 정의는 사회적 제도의 첫째 덕목(virtue)으로서, 이는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사회적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institutions)는 정치·경제·법적·사회적 제도로서 재화(good) 및 사회적 부담(social burden)의 분배를 규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과 절차적 정의의 구분은 Rawls의 정의론(1971)에서 강조되고 있다. 공공시스템으로서 규정되는 법(laws)과 제도(institutions)는 정책(policies)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제도는 사회전반에 걸친 긴밀하게 엮어진 기능들의 행태적(behavioral), 관계적(relationship)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영역에서 개인들의 행태를 규율하고 구조화하고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sup>6)</sup> 제도주의 이론의 중요한 전제는 사회적, 조직적 역량이 클수록 성과가 크다는 것이다(Salamon & Sokolowski, 2003:79).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은 사회적 정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클럽, 공공 및 민간기관, 교회, 사업 등과 사회적 조직의 역량 등을 의미한다. 즉 제도적 역량은 개인들이 공정성과 연결되는 방법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를 의미한다(Sherraden, Morrow-Howell, Hinterlong, & Rozario, 2001).

#### 4) 환경적 요인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불공정성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Attridge and Berschied, 1994; Brehm, 1992). 이에 따라 사회적 정의는 환경(circumstances), 즉 주어진 환경적 맥락(context of given situations)에 의존하다(Robinson, 2010). 이는 사람들이 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들이 처한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Miller, 2003). 즉 환경적 요인들은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Greenberg, & Zapata-Phelan, 2005). 특히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정의에 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사회적 환경이 정의를 규정하는 기준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이다(Tyler & Smith, 1995). 예를 들어, 지역의 경제수준(1인당지역 내총생산, 지역고용률 등), 도시 및 농촌 등 지역유형, 지방재정자립도 등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의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 등을 포함하는 실제적 환경(actual environment)과 인지적 환경(perceived environment) 등 지역환경이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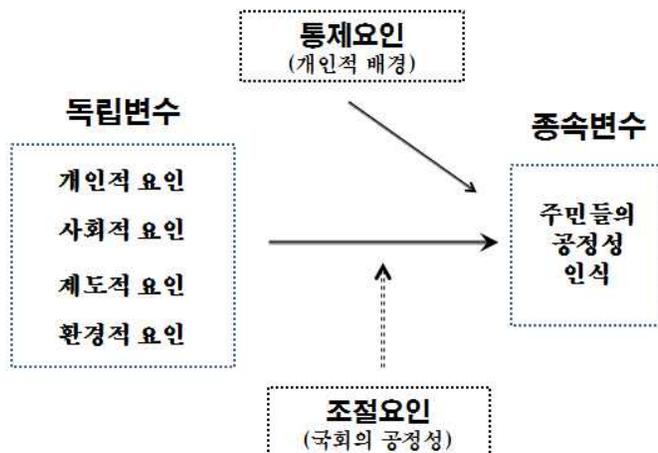
6) 제도주의 이론(institutional theory)에서는 인간행태는 사회적 제도(social institutions), 즉 정부, 행정부, 조직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규칙 등을 통해 규제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제도는 정부, 행정부, 조직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규칙 등을 의미한다.

### Ⅲ. 연구모형

#### 1. 분석 틀

Jost and Kay(2010)에 의하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는 기본권, 자유,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지원혜택 등의 보호, 인간존중과 일치하는 이미 받아들여진 분배원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편익(benefits)과 부담(burdens)의 확산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불공정성 회피의 선호를 가진 개인들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한다(Bolton & Ockenfels, 2000; Fehr & Schmidt, 1999).<sup>7)</sup>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과 조절변수로서 국회의 공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이다. 독립변수로서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정향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제도인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정책 등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역요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결정요인들과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간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지를 분석하고자 조절변수로 국회의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정의는 정치이념, 시스템, 리더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정치기관들은 사회적 정의를 보장할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방어할 의무를 지니고, 시민들은 교육이나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재의 공정한 분배 뿐만 아니라 조세나 공동체 업무의 공정한 부담을 희망하기 때문이다(Sabbagh and Schmitt, 2016). 통제변수로는 개인적 배경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분석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7)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 논란이 많고 사회적 정의, 공정성, 형평성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주로 공정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 2. 변수 및 측정지표 설정, 자료수집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Rawls의 정의론에 근거한 공정성(fairness)이다. Rawls의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sup>8)</sup> 이를 지방과 중앙간 관계에 적용하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교육기회의 공정성과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설정한다. 이는 수도권에 더 많은 명문대학들과 일자리들이 존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교육 및 취업기회가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법집행의 공정성과 정치활동의 공정성으로 설정한다. 이는 법집행 기관등인 대법원과 검찰 등의 핵심기관들이 대기업 등 경제적 부가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소위 '무전유전 유전무죄' 등에서 드러나듯이 부자들에 유리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회의원의 수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48.2%)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차등의 원칙은 복지와 균형발전의 공정성으로 설정한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도농간 복지수혜의 차이가 나고, 규제완화 등 수도권에 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함으로써 수도권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정향(Hegtvedt, 2006; Hegtvedt & Cook, 2001; Gollwitzer & van Prooijen, 2016; Gillespie & Greenberg, 2005; Skitka et al., 2010), 웰빙적 요인(Zhdanova & Lucas, 2015; Correia, Batista, & Lima, 2009; Kivimäki et al., 2005; Otto, Glaser, & Dalbert, 2009)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자본(Ferragina, 2010; Miller, 2003; Henrich et al., 2004)과 사회적 갈등(Montada, 2012; Montada and Maes, 2016)을, 제도적 요인(Rawls, 1971)을, 환경적 요인(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Greenberg, & Zapata-Phelan, 2005)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개인적 배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측정지표로는 사회경제적 정향(사회적 지위, 분배중시, 공동체이익중시, 진보적 정치성향, 정부정책관심도, 소외감, 경제안정성, 삶의 만족감, 행복감)을, 사회적 자본(지역소속감, 이타성, 시민운동단체활동, 이웃간 소통, 타인 신뢰)과 사회적 갈등(빈부간갈등, 이념간 갈등, 세대간 갈등 중앙과 지방간 갈등)을, 제도적 요인으로는 기관 소통(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 주민과 중앙정부간 소통, 주민과 국회간 소통), 기관신뢰(지방자치단체 신뢰, 중앙부처 신뢰, 국회 신뢰), 기관 청렴(지방자치단체 청렴, 국회 청렴, 중앙부처 청렴), 기관공정성(행정기관공정성, 국회공정성), 공공서비스 역량(정부 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공공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 지방복지예산, 도농, 1인당지역내총생산, 지역총생산, 지역고용 등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인 개인적 배경은 성별, 결혼, 학력,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연령 등을 설정하

8)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사회와 관련하여, 국민의 과반수 이상(61.9%)은 '출발과 과정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25.0%는 '사회적 약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차등의 원칙)', 13.1%는 '자율과 창의가 제약받지 않고 최대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사회(평등한 자유의 원칙)'라고 응답하였다(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리서치, 2010.10.29.)

였다. 그리고 공정성 인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입법정책 등을 입안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공정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변수와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측정방법		
종속 변수	사회적 정의 (공정성)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교육기회균등	1= 매우 불공정 / 4= 매우 공정	
			취업기회균등	1= 매우 불공정 / 4= 매우 공정	
		평등한 자유의 원칙	법집행	1= 매우 불공정 / 4= 매우 공정	
			정치적활동	1= 매우 불공정 / 4= 매우 공정	
		차등의 원리	복지수혜	1= 매우 불공정 / 4= 매우 공정	
			지역균형발전	1= 매우 불공정 / 4= 매우 공정	
독립 변수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정황	사회적 지위	0=매우 낮음 / 10=매우 높음	
			분배 중시	1=분배 중시 / 0=분배 경시	
			공동체이익 중시	1=공동체이익 중시 0=공동체이익 경시	
			진보적 정치정향	1=매우 보수적 / 5=매우 진보적	
			정부정책관심도	1=매우 무관심 / 5=매우 관심	
			소외감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경제안정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감	0= 매우 불만족 ~ 10=매우 만족		
		행복감	0= 매우 불행복 ~ 10=매우 행복		
	사회적 요인	사회적 자본	지역소속감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이타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시민운동단체활동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이웃간 소통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사회적 갈등	타인 신뢰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빈부간(빈곤층과중상층간) 갈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이념간(보수와진보간) 갈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제도적 요인	조직 역량	기관소통	세대간(고령층과젊은층간) 갈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중앙과 지방간 갈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정책역량	기관신뢰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	주민과 중앙정부간 소통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주민과 국회간 소통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지방자치단체 신뢰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기관청렴	중양부처 신뢰	중양부처 신뢰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국회 신뢰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지방자치단체 청렴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기관공정성	중양부처 청렴	국회 청렴	1= 매우 높음 / 5= 매우 낮음
				중양부처 청렴	1= 매우 관심 / 5= 매우 무관심
				행정기관공정성	1= 매우 적극적 / 4= 매우 소극적
	정책역량	국회공정성	행정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공공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	1= 매우 낮음 / 4= 매우 높음				

환경적 요인	지역특성	지방재정자립도	비율(%)
		지방복지예산(비중)	비율(%)
		지역(도농)	1=도시 / 0=농촌
		1인당지역내총생산	원
		지역총생산(GRDP)	백만원
		지역고용(비율)	비율(%)
조절변수	국회의 공정성		
통제변수	개인적 배경	성별	1=남성 / 0=여성
		결혼	1= 결혼, 0=미혼
		학력	1=대졸이상 / 0=대졸미만
		직업	1=사무직 / 0=비사무직
		월평균가구소득	1=월평균 400만원 이상 / 0=월평균 400만원 미만
		연령	1=60대 이상 / 0=60대 미만

본 연구에서는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2014, N=4,983명)와 통계청의 e-지방지표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독립변수로서 지역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종속변수인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관계에서 공정성 인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국회의 공정성에 따른 크기(strength)와 방향(direction)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조절효과분석을 활용하였다(배병렬, 2015). 또한 조절효과의 상호작용항은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곱으로 계산되고 다중공선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입변수들의 원래 값에 평균을 빼주는 평균중심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 3.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 틀 및 변수 설정에 따른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는 신뢰계수(Cronbach  $\alpha$ )의 값이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Cronbach 알파	변수		Cronbach 알파		
개인적 요인	개인적 배경	성별	제도적 요인	조직 역량	주민과 지방정부간 소통	.734	
		혼인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	.734	
		교육			주민과 중앙정부간 소통	.735	
		직업			주민과 국회간 소통	.735	
		소득			지방자치단체 신뢰	.734	
		연령			중앙부처 신뢰	.734	
		사회경 제적 정향			사회적 지위	.734	국회 신뢰
	분배 중시				.748	지방자치단체청렴	.734
	공동체이익 중시				.746	국회청렴	.735
	진보적 정치정향				.752	중앙부처 청렴	.734

	주관적 웰빙	정부정책관심도	.746		정책 역량	행정기관공정성	.736		
		소외감수준	.759			국회공정성	.734		
		경제안정성	.732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754		
		삶의만족도	.732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759		
		행복감	.736			공공기관 민원전달 적극성	.754		
사회적 요인	사회적 자본	지역소속감	.738	환경적 요인	지역 특성	지방재정자립도	.748		
		이타성	.747			복지예산비중	.747		
		지역사회단체활동	.745			지역(도시와 농촌)	.746		
		이웃간 소통	.740			1인당지역내총생산(원)	.747		
		타인 신뢰	.742			GRDP(백만)	.749		
	사회적 갈등	빈곤층과 중상층간 갈등	.754			공정성	공정한 기회균등	교육기회공정성	.737
		보수와 진보간 갈등	.754				평등한 자유	취업기회공정성	.735
		고령층과 젊은층간 갈등	.752				차등	법집행공정성	.734
		중앙과 지방간 갈등	.752					정치활동공정성	.737
								복지혜택공정성	.735
				지역균형발전공정성	.737				

## IV. 분석결과

### 1. 평등한 자유에 대한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1원칙인 평등의 자유의 원칙의 경우,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첫째, 법 집행의 공정성의 경우, 모델1에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공동체 이익중시정향, 정부정책관심도, 타인 신뢰, 중앙부처 신뢰, 지방자치단체 청렴, 중앙부처 청렴, 행정기관 공정성, 국회 공정성이 지역주민들의 법집행의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연령, 분배 중시정향, 보수와진보간 갈등,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주민들의 법집행의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은 주민과 의회간 소통, 정부 신뢰, 국회 청렴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법집행의 공정성인식에 정(+)의 영향을, 시민운동단체 활동, 주민과지방자치단체간 소통,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신뢰, 지방재정자립도, 국회 신뢰, 중앙부처 청렴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법집행의 공정성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활동 공정성의 경우, 모델1에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공동체 이익중시정향, 주민과 국회간 소통, 중앙부처 신뢰, 지방자치단체 청렴, 국회 청렴, 행정기관 공정성, 국회 공정성, 지방재정자립도, 1인당지역내총생산이 지역주민들의 정치활동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결혼, 연령, 진보이념적 정향, 이웃간 소통, 보수와 진보간 갈등, 중앙과 지방간 갈등,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지역총생산(GRDP), 지역고용이 지역주민들의 정치활동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은 수도권과 지방간 갈

등, 고령층과 젊은층간 갈등, 중앙부처 청렴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정치활동 공정성 인식에 정(+)  
의 영향을,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신뢰와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정치활동 공정성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

〈표 4〉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법 집행의 공정성				정치활동의 공정성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베타	t	베타	t	베타	t	베타	t	
통제 변수	개인적 배경	성별	.004	.234	.003	.210	-.005	-.310	-.007	-.457	
		결혼	.023	1.431	.022	1.339	-.037	-2.211**	-.035	-2.116**	
		학력	.000	-.004	.001	.035	-.001	-.044	-.003	-.162	
		직업	-.014	-.790	-.013	-.768	-.013	-.721	-.016	-.925	
		월평균가구소득	.025	1.523	.021	1.286	-.004	-.215	-.002	-.109	
		연령	-.030	-1.902*	-.030	-1.887*	-.026	-1.620	-.028	-1.748*	
개인의 요인	사회경제적 정향	사회적 지위	-.021	-1.125	-.020	-1.043	.001	.028	-.001	-.045	
		분배 중시	-.028	-1.804*	-.032	-2.049**	-.024	-1.542	-.024	-1.537	
		공동체이의 중시	.045	2.921**	.046	2.966**	.037	2.337**	.037	2.373**	
		진보적 정치정향	-.025	-1.558	-.025	-1.581	-.036	-2.250**	-.039	-2.426**	
		정부정책관심도	.032	2.002**	.028	1.753*	.024	1.475	.019	1.183	
		소외감	-.011	-.703	-.010	-.587	.005	.289	.008	.500	
	주관적 웰빙	경제안정성	.027	1.461	.030	1.579	.004	.235	.008	.399	
		삶의 만족감	.001	.054	.005	.226	-.021	-1.010	-.020	-.929	
	사회적 요인	사회적 자본	행복감	.008	.416	.006	.318	.005	.251	.009	.445
			지역소속감	.020	1.209	.017	.986	-.007	-.399	-.005	-.317
			이타성	-.003	-.180	-.002	-.145	.006	.371	.007	.404
			시민운동단체활동	.014	.821	.017	1.031	.009	.542	.011	.624
		사회적 갈등	이웃간 소통	.000	.020	-.001	-.038	-.060	-3.475**	-.058	-3.378**
			타인 신뢰	.037	2.318**	.034	2.103**	.016	.995	.017	1.033
빈곤층과 중상층간 갈등			.007	.425	.014	.780	-.003	-.148	-.002	-.086	
보수와 진보간 갈등			-.042	-2.432**	-.041	-2.367**	-.096	-5.445***	-.096	-5.402***	
고령층과 젊은층간 갈등			.016	.955	.016	.951	.028	1.624	.025	1.487	
중앙과 지방간 갈등			-.025	-1.457	-.026	-1.473	-.033	-1.856*	-.033	-1.844*	
제도적 요인	조직역 량	기관 소통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소통	.002	.075	.009	.314	-.035	-1.292	-.039	-1.407
			주민과 지방의회 소통	.042	1.551	.033	1.189	.040	1.446	.042	1.532
			주민과 중앙정부 소통	.005	.221	.000	.001	-.005	-.220	-.003	-.115
			주민과 국회 소통	.002	.093	.008	.341	.092	3.972***	.090	3.845***
	기관 청렴	지방자치단체 신뢰	.032	1.560	.018	.871	.030	1.445	.025	1.182	
		중앙부처 신뢰	.040	1.780*	.044	1.943*	.073	3.202**	.074	3.215**	
		국회신뢰	.029	1.314	.029	1.282	.024	1.066	.027	1.164	
		지방자치단체 청렴	.095	4.553***	.092	4.366***	.051	2.428**	.046	2.156**	
		국회 청렴	.025	1.131	.023	1.010	.084	3.738***	.072	3.128**	
		중앙부처 청렴	.098	4.134***	.095	3.992***	.039	1.648*	.043	1.782*	
	정책 역량	행정기관공정성	.167	8.974***	.162	8.532***	.091	4.841***	.086	4.479***	
		국회공정성	.168	8.389***	-.564	-1.286	.199	9.823***	.670	1.511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002	.086	.003	.185	.027	1.473	.018	.960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003	-.136	-.006	-.295	-.032	-1.699*	-.032	-1.648*	
환경적 요인	지방특성 요인	공공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	.006	.386	.005	.308	-.003	-.207	-.003	-.164	
		지방재정자립도	.027	.797	.023	.670	.097	2.864**	.091	2.648**	
		지방복지예산	-.020	-.566	-.009	-.250	-.055	-1.545	-.050	-1.387	
		지역(도농)	.002	.082	.002	.089	.017	.899	.019	.989	
		1인당지역내총생산	.015	.760	.020	.992	.095	4.774***	.098	4.794***	
		지역총생산(GRDP)	-.043	-1.890*	-.047	-2.039**	-.059	-2.569**	-.058	-2.447**	
조절 변수	국회 공정성	지역고용율	-.009	-.412	-.005	-.209	-.096	-4.168***	-.094	-4.016***	
		국회공정성 X 사회적 지위			.017	.930			.016	.830	
		국회공정성 X 경제적 안정성			-.023	-1.232			-.013	-.705	
		국회공정성 X 진보적 정치정향			.020	1.266		.008	.513		

국회공정성 X 정부정책 관심				-.003	-.164		.005	.303
국회공정성 X 지역소속감				-.004	-.266		.007	.395
국회공정성 X 이타성				-.014	-.893		.005	.310
국회공정성 X 시민운동단체 활동				-.033	-1.961*		-.007	-.410
국회공정성 X 이웃간 소통				-.002	-.090		.018	1.067
국회공정성 X 타인 신뢰				-.002	-.141		.020	1.215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050	-1.925*		.017	.641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				.067	2.506**		.011	.421
국회공정성 X 지방자치단체 신뢰				-.051	-2.477**		-.066	-3.174**
국회공정성 X 지방자치단체 청렴				-.028	-1.262		-.002	-.111
국회공정성 X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001	.080		.036	2.087**
국회공정성 X 지방재정자립도				-.052	-1.705*		-.013	-.431
국회공정성 X 지방복지예산				.012	.411		.004	.151
국회공정성 X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007	-.384		-.025	-1.337
국회공정성 X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				.013	.664		.006	.319
국회공정성 X 공공기관의 민원전달 적극성				-.003	-.196		-.013	-.795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중앙정부간 소통				-.034	-1.443		-.008	-.331
국회공정성 X 주민과 국회간 소통				.038	1.621		-.004	-.187
국회공정성 X 정부 신뢰				.088	3.868***		.001	.038
국회공정성 X 국회 신뢰				-.056	-2.480**		-.004	-.178
국회공정성 X 빈부간 갈등				.020	1.142		-.012	-.672
국회공정성 X 보수진보간 갈등				-.002	-.099		-.007	-.382
국회공정성 X 세대간 갈등				-.010	-.602		.032	1.871*
국회공정성 X 행정기관공정성				-.008	-.438		.008	.447
국회공정성 X 1인당지역내총생산				.066	.308		-.074	-.343
국회공정성 X 지역내총생산(GRDP)				.705	1.523		-.365	-.780
국회공정성 X 삶의 만족도				.040	1.339		.048	1.605
국회공정성 X 행복감				-.015	-.772		-.023	-1.153
국회공정성 X 중앙부처 청렴				-.050	-2.058**		.042	1.703*
국회공정성 X 국회 청렴				.070	2.941**		.026	1.075
R <sup>2</sup>	.301	.314	.288	.299				
adj-R <sup>2</sup>	.291	.297	.278	.282				
F-value	29.598***	17.956**	27.797***	16.742*				
유의확률(F값 변화량)	.000	.005	.000	.040				

주 1: \*\*\* p < 0.001, \*\* p < 0.05, \* p < 0.1

## 2.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 1)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측정지표로는 교육기회의 공정성과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기회의 공정성의 경우, 모델1에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주민들의 공동체이익증시정향, 정부정책관심, 삶의 만족, 지방자치단체 신뢰, 중앙부처 신뢰, 지방자치단체 청렴, 중앙부처 청렴, 행정기관 공정성,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역주민들의 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민들의 분배증시정향, 중앙과 지방간 갈등인식, 국회 신뢰, 국회공정성,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고용은 지역주민들의 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국회공정성은 타인 신뢰, 빈부간 갈등, 지역내총생산(GRDP), 국회 청렴성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반면에 경제안정성, 지역소속감, 지방자치단체 청렴성, 지방재정자립도,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행정기관 공정성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교육

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기회의 공정성의 경우, 모델1에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결혼, 사회적 지위, 공동체이익중시정향, 정부정책관심도, 경제안정성, 타인 신뢰,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소통, 주민과 국회간 소통, 지방자치단체 청렴, 국회 청렴, 행정기관 공정성, 국회 공정성, 지방재정자립도,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월평균가구소득, 분배중시정향, 진보이념적정향,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 지방복지예산, 지역고용은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국회공정성은 삶의 만족, 국회 청렴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보수진보간 갈등, 중앙부처 청렴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교육기회의 공정성				취업기회의 공정성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베타	t	베타	t	베타	t	베타	t	
통제 변수	개인적 배경	성별	.007	.408	.009	.510	-.020	-1.210	-.018	-1.074	
		결혼	.000	.023	-.003	-.152	.030	1.732*	.029	1.668*	
		학력	.008	.414	.010	.525	-.007	-.366	-.010	-.493	
		직업	-.021	-1.125	-.024	-1.300	-.019	-1.025	-.018	-.972	
		월평균가구소득	-.010	-.557	-.012	-.709	-.027	-1.531	-.029	-1.667*	
독립 변수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정향	연령	-.003	-.172	-.005	-.287	.024	1.403	.024	1.424
			사회적 지위	-.027	-1.347	-.024	-1.194	.056	2.784**	.058	2.866**
			분배 중시	-.036	-2.173**	-.042	-2.566**	-.036	-2.201**	-.038	-2.298**
			공동체이익 중시	.038	2.258**	.041	2.486**	.042	2.548**	.043	2.572**
			진보적 정치정향	-.014	-.845	-.014	-.839	-.032	-1.892*	-.033	-1.959*
			정부정책관심도	.032	1.862*	.030	1.745*	.041	2.445**	.039	2.252**
	주관적 웰빙	소외감	-.029	-1.642	-.020	-1.162	.016	.911	.018	1.008	
		경제안정성	.008	.391	.005	.272	.047	2.355**	.047	2.303**	
		삶의 만족감	.059	2.642**	.059	2.646**	.023	1.060	.029	1.306	
	사회적 요인	사회적 자본	행복감	.018	.845	.022	1.042	-.025	-1.176	-.028	-1.312
			지역소속감	.020	1.131	.016	.863	.012	.653	.013	.708
			이타성	.024	1.436	.023	1.353	-.015	-.908	-.017	-.969
			시민운동단체활동	-.003	-.188	.006	.348	-.004	-.231	.003	.181
		사회적 갈등	이웃간 소통	-.026	-1.434	-.021	-1.169	.005	.301	.006	.323
			타인 신뢰	.024	1.362	.023	1.348	.034	1.965*	.029	1.657*
빈곤층과 중상층간 갈등			-.014	-.737	-.008	-.436	-.021	-1.112	-.017	-.940	
보수와 진보간 갈등			.004	.204	.009	.472	-.010	-.550	-.005	-.276	
고령층과 젊은층간 갈등			.022	1.195	.022	1.199	.000	-.014	-.003	-.149	
중앙과 지방간 갈등	-.066	-3.535***	-.064	-3.443**	-.017	-.892	-.018	-.990			
제도적 요인	조직 역량	기관 소통	주인과 지방자치단체 소통	.036	1.252	.036	1.244	.050	1.754*	.050	1.740*
			주인과 지방의회 소통	.038	1.291	.033	1.123	-.046	-1.609	-.055	-1.868*
			주인과 중앙정부 소통	-.014	-.576	-.016	-.662	.013	.541	.013	.544
		기관 신뢰	주인과 국회 소통	.007	.288	.005	.222	.072	2.956**	.077	3.133**
			지방자치단체 신뢰	.049	2.237**	.038	1.745*	.030	1.387	.023	1.047
			중앙부처 신뢰	.069	2.818**	.064	2.632**	-.002	-.079	-.003	-.113
	기관 청렴	국회 신뢰	-.040	-1.654	-.043	-1.797*	.023	.965	.019	.807	
		지방자치단체 청렴	.065	2.911**	.059	2.601**	.069	3.099**	.062	2.761**	
		국회 청렴	-.037	-1.542	-.035	-1.416	.075	3.140**	.078	3.170**	
	기관 공정성	중앙부처 청렴	.073	2.867**	.073	2.870**	-.032	1.261	.030	1.183	
		행정기관공정성	.196	9.839***	.180	8.856***	.080	4.055***	.075	3.707***	
		국회공정성	.082	3.823***	-1.03	-2.208**	.141	6.608***	-.197	-.421	

환경적 요인	정책 역량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031	1.545	.033	1.665*	.009	.444	.011	.569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016	.783	.007	.325	-.003	-.135	-.008	-.416
		공공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	-.007	-.424	-.005	-.302	.002	.129	.003	.191
	지방특성 요인	지방재정자립도	.076	2.118**	.075	2.070**	.070	1.948*	.066	1.824*
		지방복지예산	-.058	-1.513	-.055	-1.425	-.090	-2.375**	-.091	-2.378**
		지역(도농)	-.012	-.589	-.017	-.818	.014	.680	.011	.543
		1인당지역내총생산	.023	1.083	.035	1.637	.067	3.216**	.067	3.114**
		지역총생산(GRDP)	-.064	-2.618**	-.072	-2.884**	-.022	-.911	-.021	-.836
	지역고용률	-.057	-2.312**	-.060	-2.418**	-.089	-3.675***	-.091	-3.664***	
조절 변수	국회 공정성	국회공정성 X 사회적 지위			.026	1.307			.002	.099
		국회공정성 X 경제적 안정성			-.051	-2.562**			-.020	-.998
		국회공정성 X 진보적 정치정향			.010	.585			.002	.131
		국회공정성 X 정부정책 관심			.024	1.406			.010	.580
		국회공정성 X 지역소속감			-.045	-2.528**			-.004	-.253
		국회공정성 X 이타성			-.004	-.254			-.003	-.174
		국회공정성 X 시민운동단체 활동			-.001	-.040			-.009	-.526
		국회공정성 X 이웃간 소통			-.007	-.399			.015	.865
		국회공정성 X 타인 신뢰			.030	1.717*			-.009	-.519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007	-.237			-.033	-1.176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			.026	.920			.029	1.002
		국회공정성 X 지방자치단체 신뢰			-.022	-1.010			-.030	-1.383
		국회공정성 X 지방자치단체 청렴			-.057	-2.449**			-.013	-.572
		국회공정성 X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005	-.262			.020	1.110
		국회공정성 X 지방재정자립도			-.108	-3.286**			-.037	-1.116
		국회공정성 X 지방복지예산			.011	.355			-.002	-.050
		국회공정성 X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009	.465			.015	.753
		국회공정성 X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			-.036	-1.762*			-.017	-.850
		국회공정성 X 공공기관의 민원전달 적극성			-.001	-.004			.026	1.541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중앙정부간 소통			.008	.331			.006	.235
		국회공정성 X 주민과 국회간 소통			.011	.421			.005	.190
		국회공정성 X 정부 신뢰			.011	.466			.018	.746
		국회공정성 X 국회 신뢰			-.027	-1.104			-.014	-.584
		국회공정성 X 빈부간 갈등			.034	1.790*			.016	.822
		국회공정성 X 보수진보간 갈등			-.026	-1.372			-.035	-1.825*
		국회공정성 X 세대간 갈등			.010	.581			.012	.663
		국회공정성 X 행정기관공정성			-.047	-2.336**			-.003	-.162
		국회공정성 X 1인당지역내총생산			-.001	-.005			.018	.081
국회공정성 X 지역내총생산(GRDP)			1.170	2.363**			.379	.766		
국회공정성 X 삶의 만족도			.048	1.519			.071	2.242**		
국회공정성 X 행복감			-.020	-.949			-.031	-1.476		
국회공정성 X 중앙부처 청렴			-.012	-.453			-.060	-2.301**		
국회공정성 X 국회 청렴			.072	2.809**			.064	2.521**		
R <sup>2</sup>			.196	.216	.208	.218				
adj-R <sup>2</sup>			.184	.196	.196	.198				
F-value			16.688***	10.816***	18.031***	10.942*				
유의확률(F값 변화량)			.000	.000	.000	.040				

주 1: \*\*\* p<0.001, \*\* p<0.05, \* p<0.1

## 2) 차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로는 복지혜택 공정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첫째, 복지혜택 공정성의 경우, 모델1에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사회적 지위 인식도, 공동체이익중시정향, 경제안정성, 삶의 만족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소통, 지방자치단체 청렴, 국회 청렴, 중앙부처 청렴, 행정기관 공정성, 지역이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성별, 월평균소득, 분배중시정향, 보수와 진보간 갈등,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공공기

관 민원전달의 적극성이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은 이웃간 소통, 주민과 의회간 소통, 지역내총생산, 국회 청렴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이타성,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소통, 지방재정자립도, 국회 신뢰, 1인당지역내총생산, 중앙부처 청렴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의 경우, 모델1에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공동체이익중시정향, 주민과 국회간 소통, 중앙부처 신뢰, 지방자치단체 청렴, 국회 청렴, 행정기관 공정성, 공공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역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분배중시정향, 진보이념적정향, 소외감, 이타성, 중앙과 지방간 갈등, 국회 공정성, 지방복지예산,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고용이 지역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은 진보이념적정향,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지방복지예산,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지역내총생산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지방재정자립도,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과 상호작용시 지역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표 6〉 차등의 원리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복지혜택의 공정성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베타	t	베타	t	베타	t	베타	t	
통제 변수	개인적 배경	성별	-.028	-1.672*	-.028	-1.728*	.010	.600	.011	.692	
		결혼	.010	.597	.009	.520	.029	1.703*	.027	1.553	
		학력	.020	1.044	.016	.851	-.012	-.625	-.010	-.540	
		직업	-.026	-1.455	-.025	-1.395	.002	.108	.000	.014	
		월평균가구소득	-.030	-1.725*	-.030	-1.738*	-.014	-.789	-.011	-.654	
		연령	.001	.059	.000	-.004	.023	1.415	.021	1.294	
독립 변수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정향	사회적 지위	.046	2.355**	.045	2.276**	.033	1.672*	.031	1.548
			분배 중시	-.027	-1.655*	-.032	-1.954*	-.027	-1.687*	-.031	-1.918*
			공동체이익 중시	.034	2.118**	.035	2.143**	.041	2.527**	.045	2.762**
			진보적 정치정향	-.015	-.915	-.018	-1.069	-.034	-2.058**	-.034	-2.083**
			정부정책관심도	-.007	-.402	-.005	-.274	.005	.326	.003	.187
			소외감	.008	.465	.009	.514	-.033	-1.942*	-.032	-1.858*
	주관적 웰빙	경제안정성	.064	3.282**	.065	3.276**	.027	1.380	.027	1.349	
		삶의 만족감	.037	1.699*	.040	1.833*	.002	-.034	.000	.023	
		행복감	.005	.238	.002	.076	-.001	-.036	.001	.069	
		지역소속감	-.004	-.230	-.001	-.044	-.019	-1.079	-.019	-1.091	
사회적 요인	사회적 자본	이타성	-.016	-.995	-.018	-1.093	-.031	-1.884*	-.033	-1.972**	
		시민운동단체활동	-.002	-.135	.003	.175	-.007	-.402	.000	.008	
		이웃간 소통	-.009	-.521	-.011	-.634	-.012	-.692	-.014	-.784	
		타인 신뢰	.019	1.104	.013	.771	.029	1.701*	.025	1.443	
	사회적 갈등	빈곤층과 중상층간 갈등	-.020	-1.131	-.016	-.857	-.027	-1.513	-.022	-1.224	
		보수와 진보간 갈등	-.049	-2.664**	-.048	-2.618**	-.024	-1.314	-.020	-1.113	
		고령층과 젊은층간 갈등	.018	1.025	.015	.875	.018	1.038	.017	.939	
		중앙과 지방간 갈등	.001	.029	-.002	-.097	-.061	-3.365**	-.061	-3.357**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소통	.040	1.420	.054	1.924*	-.004	-.149	.000	-.007	
		주민과 지방의회 소통	-.007	-.259	-.027	-.944	.045	1.607	.040	1.384	
제도적 요인	조직 역량	기관 소통	주민과 중앙정부 소통	-.011	-.453	-.010	-.434	.010	.421	.008	.330
			주민과 국회 소통	.032	1.319	.038	1.558	.042	1.770*	.050	2.072**

	기관 신뢰	지방자치단체 신뢰	.031	1.465	.021	.958	.010	.489	.003	.156	
		중앙부처 신뢰	.038	1.606	.036	1.507	.055	2.342	.055	2.289**	
		국회 신뢰	-.032	-1.381	-.031	-1.322	-.027	-1.142	-.031	-1.300	
		기관 청렴	지방자치단체 청렴	.077	3.546***	.076	3.450**	.057	2.602**	.055	2.510**
			국회 청렴	.067	2.858**	.068	2.835**	.093	3.966***	.097	4.060***
			중앙부처 청렴	.100	4.065***	.090	3.648***	.020	.828	.017	.684
	기관 공정성	행정기관공정성	.122	6.308***	.121	6.096***	.121	6.256***	.119	6.016***	
		국회공정성	.132	6.303***	-.249	-.545	.150	7.158***	-.877	-1.911*	
	정책 역량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026	1.333	.032	1.624	.011	.578	.017	.865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	-.024	-1.258	-.033	-1.678*	-.015	-.795	-.023	-1.167	
		공공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	-.033	-2.026**	-.033	-2.059**	.036	2.236**	.031	1.872*	
	환경적 요인	지방특성 요인	지방재정자립도	.004	.128	.006	.171	.282	8.053***	.274	7.691***
지방복지예산			.046	1.243	.046	1.231	-.221	-5.964***	-.216	-5.765***	
지역(도농)			.066	3.337**	.067	3.387**	.020	1.013	.021	1.032	
1인당지역내총생산			-.006	-.270	.005	.259	.017	.832	.025	1.175	
지역총생산(GRDP)			-.039	-1.634	-.039	-1.598	-.068	-2.843**	-.062	-2.529**	
지역고용률			.019	.783	.012	.502	-.095	-3.999***	-.101	-4.162***	
조절 변수	국회 공정성	국회공정성 X 사회적 지위			.017	.879			.017	.855	
		국회공정성 X 경제적 안정성			-.010	-.526			.002	.094	
		국회공정성 X 진보적 정치정향			.022	1.329			.039	2.353**	
		국회공정성 X 정부정책 관심			.021	1.242			-.002	-1.110	
		국회공정성 X 지역소속감			-.008	-.434			-.009	-.543	
		국회공정성 X 이타성			-.034	-2.041**			-.020	-1.165	
		국회공정성 X 시민운동단체 활동			.005	.310			.001	.085	
		국회공정성 X 이웃간 소통			.028	1.600			-.007	-.387	
		국회공정성 X 타인 신뢰			-.020	-1.186			-.002	-.125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110	-4.052***			-.036	-1.309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			.058	2.091**			.051	1.827*	
		국회공정성 X 지방자치단체 신뢰			.006	.269			-.029	-1.337	
		국회공정성 X 지방자치단체 청렴			-.020	-.877			.002	.106	
		국회공정성 X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003	.140			.039	2.149**	
		국회공정성 X 지방재정자립도			-.068	-2.114**			-.110	-3.424**	
		국회공정성 X 지방복지예산			.040	1.313			.060	1.978**	
		국회공정성 X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006	.298			.040	2.027**	
		국회공정성 X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			-.008	-.417			-.050	-2.487**	
		국회공정성 X 공공기관의 민원전달 적극성			.019	1.124			-.007	-.439	
		국회공정성 X 주민과 중앙정부간 소통			.006	.233			-.028	-1.138	
		국회공정성 X 주민과 국회간 소통			.030	1.201			-.004	-.172	
		국회공정성 X 정부 신뢰			.032	1.340			.027	1.137	
		국회공정성 X 국회 신뢰			-.039	-1.651*			-.004	-.161	
		국회공정성 X 빈부간 갈등			.003	.153			-.002	-.123	
		국회공정성 X 보수진보간 갈등			.009	.506			-.015	-.796	
		국회공정성 X 세대간 갈등			.026	1.498			.027	1.556	
		국회공정성 X 행정기관공정성			.003	.152			-.001	-.059	
		국회공정성 X 1인당 지역내총생산			-.424	-1.901*			.012	.055	
		국회공정성 X 지역내총생산(GRDP)			.817	1.693*			1.013	2.093**	
		국회공정성 X 삶의 만족도			.011	.361			-.007	-.236	
		국회공정성 X 행복감			-.030	-1.464			-.006	-.308	
		국회공정성 X 중앙부처 청렴			-.059	-2.323**			-.039	-1.517	
국회공정성 X 국회 청렴			.072	2.873**			.030	1.199			
R <sup>2</sup>			.239	.256	.238	.250					
adj-R <sup>2</sup>			.228	.237	.227	.231					
F-value			21.606***	13.458***	21.398***	13.081**					
유의확률(F값 변화량)			.000	.000	.000	.022					

주 1: \*\*\* p < 0.001, \*\* p < 0.05, \* p < 0.1

### 3. 분석적 시사점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한 분석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개인적 배경과 관련하여, 나이가 젊을수록 법집행의 공정성과 정치활동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층들이 상대적으로 현실비판 및 냉소주의가 강해 정치권력과 관련된 분야인 법과 정치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실망감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결혼할수록 취업기회의 공정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취업기회나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은 경제적 수준 등 지역발전 수준이 높을 때 공정성이 담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 결혼한 사람들이 가족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위 5포세대나 1인 가족 등 비결혼자들보다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향유함으로써 취업기회나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일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복지혜택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복지혜택의 주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동체이익을 중시할수록, 정부정책 관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배를 중시할수록 법 집행, 교육기회, 취업기회, 복지혜택, 지역발전의 공정성 인식이 부정적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사회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러한 분야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치활동, 취업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데, 이는 정치활동, 취업기회,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시장 및 경쟁 등 자유주의 정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 자원은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타성이 강할수록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데, 이는 개인간 이타성이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시킴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는 배타성을 창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민간 소통이 강할수록 정치활동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데, 이는 주민간 소통의 산물을 정치체제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중에서 보수와 진보간 갈등, 즉 이념적 갈등이 높을수록 법 집행, 정치활동, 복지혜택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 등, 무상급식 등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사회에 갈등해결 능력과 사회적 합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앙과 지방간 갈등, 즉 지역간 갈등이 심할수록 정치활동, 교육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데, 이는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기관들이 소재하고 경제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쪽지예산 등에서 드러나듯이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무형의 정치활동을 통해 배타적으로 지역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주민간 신뢰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관 신

뢰 44.7%, 주민신뢰 72.2%라는 점(통계청, 2016)에서 나타나듯이 상대적으로 주민 신뢰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이 강할수록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이 강한 반면에 주민과 지방의회간 소통은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정책개발 능력이 부족하거나 선심성 공약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효성 등이 부족하여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민과 국회의원간 소통이 강할수록 정치활동, 취업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이 높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정치활동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제 도입 등 지역민원 또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취업기회 및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 신뢰중에서 중앙부처의 신뢰가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이 높은 반면에 국회의 신뢰와 국회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복지 등을 통해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반면에 국회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당간 정쟁에 집중함으로써 도리어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렴과 중앙부처의 공정성은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당간 정쟁에 집중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역대표로서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책역량 요인중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활동의 공정성이 낮아지고, 공공기관의 민원전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복지혜택과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활동, 복지혜택,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분야가 정부부처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분야라기보다는 정당 및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이 높을수록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정책은 전교조, 학부모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교육복지 등 교육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환경적 요인들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정치활동, 교육기회, 취업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이 높은 반면에 지역고용율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교육기회, 취업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도시지역으로서 정치활동이 활성화되고, 교육 및 취업기회가 많으며,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상

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반면에 비록 지역고용율이 높은 지역이 도시지역일지라도 이들 지역이 주로 젊은층, 고학력층, 고소득층들이 많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을 비롯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데, 고용의 질이 낮을 경우 정치활동, 교육기회, 취업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복지예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을지라도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데, 이처럼 공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요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는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 요인들의 성과가 주민들의 기대보다 적을 때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기대불일치(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s)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국회의 공정성이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결합할 경우 그 효과의 크기(strength)와 방향(direction)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주민·지방의회간 소통, 정부 신뢰, 국회 청렴도가 높을 경우 국회의 공정성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주민의 시민운동단체활동, 주민·지방자치단체간 소통,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신뢰, 지방재정자립도, 국회 신뢰, 중앙부처 청렴도가 높을 경우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회의 공정성은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세대간 갈등, 중앙부처의 청렴도가 높을 경우 정치활동의 공정성의 증가시키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신뢰도가 높을 경우에는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개인간 신뢰, 지역내 총생산, 국회 청렴도가 높을 경우 국회의 공정성은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성, 지역소속감,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지방재정자립도,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의 관심, 행정기관의 공정성이 높을 경우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공정성은 삶의 만족도, 국회 청렴도가 높을 경우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보수진보간 갈등, 중앙부처 청렴도가 높을 경우에는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등의 원리와 관련하여, 국회의 공정성은 주민·지방의회간 소통, 지역내총생산, 국회 청렴도가 높을 경우 복지혜택의 공정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사회적 이타성, 주민·지방자치단체간 소통, 지방재정자립도, 국회 신뢰, 1인당지역내총생산, 중앙부처 청렴도가 높을 경우에는 복지혜택의 공정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회의 공정성은 진보정향, 주민·지방의회간 소통,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지방복지예산,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영향력, 지역내총생산이 높을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지방재정자립도,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가 높을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국회공정성의 효과가 요인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의 역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회가 공정성 역량을 통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결합하여 공정성의 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역효과를 초래한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지역시민운동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함으로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소위 '방탄국회'라는 용어처럼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과정상 국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정책감시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중앙부처 내부의 부패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등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지역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들 지역에 주로 젊은층, 고학력층, 고소득층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회가 상대적으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총생산(GRDP)과 지역고용율이 높은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창출 수요를 예산심의 등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위 나눠먹기식 예산배분행태를 통해 정치적 예산배분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버이연합 등에서 드러나듯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념성향이 강할수록 극단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간 갈등과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강할수록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정부관심도와 지역주민간 소통 요구가 높은 반면 이러한 요구들을 정치체제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공정성을 담보할 최적의 대안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해진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공정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공정으로서 사회적 정의는 모든 구성원 사이에 혜택이나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Miller, 2003). Rawls가 주장했듯이,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측면의 사회적 제도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는 사회적 공정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적 측면의 사회적 정의구현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의의 제1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 측면인데,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위 '전관예우'라는 법조계 관행을 혁파하고, 소위 '사회지도층'들의 솔선수범적 법준수가 중요하다. 이는 국민인식조사결과, 사회지도층의 법질서위반행위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단속되어야 하는 행위의 경우, 1순위로 탈세(31.1%), 기업자금 횡령/배임(19.0%),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17.9%) 이었고, 2순위로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20.8%), 탈세(18.8%), 기업자금 횡령/배임(14.3%) 등으로 나타났다(신의기·강은영, 2012)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정치활동 공정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중요하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제로는 유권자가 각 정당의 지지도 선호만 반영할 수 있는 현행의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각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후보자의 선호도까지 반

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활동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의의 2원칙으로 공정한 기회균등 측면이다. 지역주민들의 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활성화(전기우, 2013)와 저소득층 교육기회 및 사회진출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제공,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를 위한 통합적 지원, 학습자의 상호이해, 상호작용 기회 제공, 다양한 존중경험을 위한 다양한 학습집단 구성, 학업중단자를 위한 학습기회 제공, 진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급학교 진학기회의 연계, 성공적인 학교생활, 사회진출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충분한 교육비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류방란, 2011).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한 정보제공,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일자리창출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업무와 지역대학간 협력을 구축하여 지역특화용 교육과정을 특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차등 측면이다.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예산 배분의 차등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 이후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1인당 사회복지비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인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진재문, 2012), 지역간 소득 및 재정자립도의 격차로 지역복지 형평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흥주·구찬동(2014)에 의하면, 군 단위 보다는 구 및 시 단위 지역이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시·도비와 국비의 지역간 격차 완화효과 분석결과, 군과 구의 경우 시·도비와 국비 모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한 반면에 시의 경우 도비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주었지만 국비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토대로, 시·도비가 국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치단체 간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의 조정, 즉 지방비 예산의 확대를 전제로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위나 광역시 단위로 더 많은 복지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물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지역의 자생적 균형발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나 지역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전략 산업이나 지역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역기반 산업발전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역기반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중요한데, 중앙정부는 각 지역간 산업의 중복(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산업 기반에 대한 정교한 수요조사 및 역량조사를 시계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자료 수집의 문제로서 단년도

연구의 문제이다.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은 역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계열적 연구 또는 패널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의 한계로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에는 시계열적 연구나 패널연구, 코호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법론적 한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공정성의 각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한 연구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명환. (2012).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한국정책학회보」, 21(1):103-130.
- 김석준. (1991). 한국의 국가성격과 관료의 형평의식. 「한국행정학보」, 25(3):727-751.
- 김은희·박희서. (2007).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공정성 지각이 친정부적 자발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1(4):261-285.
- 김이수. (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 -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2):157-180.
- 김정호. (1995). 신행정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본 형평(衡平)의 의미에 관한 소고. 「김천대학교 논문집」, 16:469-484.
- 김항규. (1994). 「행정철학」. 대영출판사.
- 김현철. (2004). 사회정의의 개념과 의의. 「법학논집」, 9(1):1-19.
- 김홍주·구찬동. (2014). 정부재정보조가 지역 간 복지예산 불평등도 완화에 미친 효과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191-218.
- 김 철. (2011). 정의란 무엇인가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평. 「사회이론」, 39:37-74.
- 류방탄. (2011).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기회 및 사회진출 확대 방안. 「교육개발」, 38(1):22-27.
- 신의기·강은영. (2012).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기본연구보고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국신. (2003). 효율과형평. 「중앙대학교 경제논문집」, 18:85-93.
- 양형일·이태영. (1993). 사회적 형평과 국가통합을 향한 대표관료제의 접근. 「한국행정학보」, 27(2):343-357.
- 이민호. (2010). 규제개혁을 위한 형평성 기준의 제고 방안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형평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261-289.
- 이종수. (2011).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25(1):15-34.
- 이재은. (1988). 국가재정과 형평 : 1960년대 이후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구조적 불공평. 「경

- 제학연구」. 36(1)107-135.
- 임의영. (2011). 「형평과 정의」. 한울출판사.
- 유민봉·고성철. (2001). 정책결정 기준으로서의 공익과 사회적 형평. 「사회과학」. 52:139-161.
- 윤상용. (2011). 2011 지방세법 개정이 자치구 재정 형평에 미치는 영향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 10(1):49-65
- 전기우. (2013). 교육불평등 대처정책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013년도 학술발표논문집」.
- 진재문. (2012). 시·군·구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205-27.
- 정원섭. (2011). 정의론과 공정성의 조건. 「철학과현실」. 88:22-34.
- 차용준. (1988). 사회복지 연원으로서의 사회적 정의(형평). 「사회과학논총」. 4: 87-110.
- 황청일. (2005). 공공복리를 위한 형평적정의. 「한국사회과학연구」. 27(3):22-51.
- 한국행정연구원. (2014). 「2013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한국리서치. (2010).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2010.10.29)
- 통계청. 국민 삶의 지표(<http://qol.kostat.go.kr/blife/main.do>)
- Andrews, F. M., and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Aristotle. (2000). *Nicomachean ethics*. The Internet Classics Archive by Daniel C. Stevenson.
- Attridge, M & Berscheid, E. (1994). *Entitle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the United States: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In M.J. Lerner and G. Mikula, (Eds.).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Justice in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Plenum Press.
- Bègue, L., & Bastounis, M. (2003). Two spheres of belief in justice: Extensive support for the bidimensional model of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71:435-463.
- Bess, K. D., Fisher, A. T., Sonn, C. C., & Bishop, B. J. (2002). Introduction.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p. 6). New York, N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Brehm, S. (1992).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McGraw Hill.
- Brewer, G. A(2003). Building Social Capital: Civic Attitudes And Behavior Of Public Servants. *Journal Of Public Admin Research And Theory*, 13(1):5-26.
- C. Sabbagh, & M. Schmitt. (2016).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1-11.
- Cohen-Charash, Y., & Spector, P. E. (2001). The role of justice in organizations: A meta-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6(2):278-321.
- Colquitt, J. A., Greenberg, J., & Zapata-Phelan, C. P. (2005). What is organizational justice? A historical overview. In J. Greenberg & J. A. Colquitt (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pp. 3-56)*, London: Psychology Press.
- Correia, I., Batista, M. T., & Lima, M. L. (2009). Does the belief in a just world bring happiness? Causal relationships among belief in a just world, life satisfaction and mood.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220-227.

- Cropanzano, R., Bowen, D. E., & Gilliland, S. W. (2007).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justic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4):34-48.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79-98.
- \_\_\_\_\_ (2009). Belief in a just world.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pp. 288-297), New York, NY: Guilford.
- Dworkin, R. (2002). Sovereign Virtue Revisited. *Ethics*, 113(1):106-143.
- E Ferragina. (2010). Social Capital and Equality: Tocqueville's Legacy: Rethinking social capital in relation with income inequalities. *The Tocqueville Review/La Revue Tocqueville*, 31(1):73-98.
- Feinberg, J. (1973). *Social philosoph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innis, J. (1980).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Folger, R., & Skarlicki, D. P. (2001). Fairness as a dependent variable: Why tough times can lead to bad management. In R. Cropanzano (Ed.), *Justice in the workplace: From theory to practice* (pp. 97-118). Mahwah, NJ: Erlbaum
- Fullinwider, R. K., ed. (1999). *Civil Society, Democracy, And Civic Renewal*.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Gillespie, J. Z., & Greenberg, J. (2005). Are the goals of organizational justice self-interested? In J. Greenberg & J. A. Colquitt (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pp. 179-21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eenberg, J., & Wiethoff, C. (2001). organizational justice as proaction and reac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 In R. Cropanzano (Ed.), *Justice in the workplace: From theory to practice* (pp. 271-302). Wahwah, NJ: Lawrence Erlbaum.
- Gundelach, P., &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359-386.
- Haller, M., &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169-216.
- Hegtvedt, K. A. (2006). Justice frameworks. In P. Burke (Ed.), *Contemporary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pp. 46-69).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gtvedt, K. A., & Cook, K. S. (2001). Distributive justice: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In J. Sanders & V. L. Hamilton (Eds.), *Handbook of justice research in law* (pp.93-132). New York: Kluwer/Plenum.
- Helliwell, J. F., &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London*, 359:1435-1446.
- Henrich, J., Boyd, R., Bowles, S., Camerer, C., Fehr, E., & Gintis, H. (2004). *Foundations of*

- human sociality: Economic experiments and ethnographic evidence from fifteen small-scale societ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J. Konow, & L. Schwettmann. (2016). The economics of justice.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83-106
- Jost, J. T., & Kay, A. C. (2010). Social justice: History, theory, and research.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Jost, J. T., Federico, C. M., & Napier, J. L.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307-337.
- L. Zhdanova, T. Lucas. (2015). Justice Beliefs, Personal Well-Being and Harsh Social Attitudes: Initial Demonstration of a Polynomial Regression an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Current Psychology*, 1-15.
- L. Montada, & J Maes. (2016). Justice and self-interest.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109-125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ind, E. A. (2001). Fairness heuristic theory: Justice judgements as pivotal cognitions in organizational relations. In J. Greenberg & R. Cropanzano (Eds.), *Advances in organizational justice* (pp. 56-88).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4-25.
- Lucas, T., & Wendorf, C. A. (2012). Perceived justice and worker well-being: How and for whom do unethical work practices matter? In R. A. Giacalone & M. D. Promislo (Eds.), *Handbook of unethical work behavior: Implications for individual well-being* (pp. 237-252). New York, NY: M.E. Sharpe.
- M. Fleurbaey. (2008). *Fairness, responsibility, and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 M. Gollwitzer, & JW van Prooijen. (2016). Psychology of Justice.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61-82
- M, Robinson. (2010). Assessing criminal justice practice using social justice theory. *Social Justice Research*, 23:77-97.
- Miller, D. (2003).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ntada, L. (2012). The normative impact of empirical justice research. In E. Kals & J. Maes (Eds.). *Justice and conflicts*(pp. 3-19), Berlin, Germany: Springer
- Nalbandian, John. 1989. Nalbandian on the Court and Social Equ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3):293-294.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New York.
- Otto, K., Glaser, D., & Dalbert, C. (2009). Mental health, occupational trust, and quality of

- working life: Does belief in a just world matt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1288-1315.
- Pichler, F. (2006).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Young Europeans. Feeling Happy But Who Knows W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3):419-444.
- Pieper, J. (1972). *Justicia y Fortaleza*, Madrid: Ediciones Rialp.
- Prezza, M., & Con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8:181-194
- Prilleltensky, I. (2012). Wellness as fair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1-21.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Belknap Press.
- Sagiv, L., & Schwartz, S. H. (2000). Value Prior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rect Relations And Congruity Eff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2):177-198.
- Sandel, M.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Sen, A. (2009). *The Idea of Justice*. London: Allen Lane.
- Sherraden, M., Morrow-Howell, N., Hinterlong, J., & Rozario, P. (2001). Productive aging: Theoretical choices and directions. In N. Morrow-Howell, J. Hinterlong, & M.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pp. 260-28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 S. Liebig, & C. Sauer. (2016). Sociology of justice.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37-59
- Salamon Leister M. and Wojciech S. Sokolowski. (2003). Institutional Roots of Volunteering, in: Dekker Paul and Loek Halman (eds.), *The Values of Volunteering.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71-90.
- Sandel, M. J.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kitka, L. J., Aramovich, N. P., Lytle, B. L., & Sargis, E. G. (2010). Knitting together an elephant: An integr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justice reasoning. In D. R. Bobocel, A. C. Kay,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justice and legitimacy: The Ontario symposium*(Vol. 11, pp. 1-26).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TR Tyler, & HJ Smith. (1995). *Social justice and social movements*.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Working Paper Series.
- T. Rothmund, JC Becker, JT Jost. (2016). The psychology of social justice in political thought and action.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275-291.
-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Oxford: Blackwells.

Weiss, H. M., Suckow, K., & Cropanzano, R. (1999). Effects of justice conditions on discrete emo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786-794.

Young, I.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김이수(金利修):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통령 산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민참여, 지방자치, 거버넌스, 과학기술정책, 지방행정, 산업정책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 간 협력에 관한 연구”(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2016), “협력적 관리구조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2014) 등이 있다(b9003361@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6. 7. 1 / 심사개시일: 2016. 7. 19 / 심사완료일: 2016. 8. 4〉

###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Determinants Of Fairness Perception In Local Citize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Assembly

Kim, Lee Soo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fairness perception in local citize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assembly questingly. In order to analyze, theoretical rationale on social justice is reviewed and determinants of fairness perception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social, institutional, environmental factors. In this study, dependent variables are suggested as perceived fairness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individual, social, institu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s a methodology,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are used an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social status, community benefits, policy interest, life satisfaction,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 are high, perceived fairness of citizens are increased. Second, high integrity of assembly increases perceived fairness of citizens.

Key Words: Fairness, Perceived Fairness, fairness of Assembly, Social Justice, citizen's perception